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9월호 특집 해외 경찰제도 탐방 ②

자유와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 경찰

자치경찰 INTERVIEW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홍익대학교 법학과 김성태 교수

현장 목소리

자치경찰제 1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충북**

위원회 FOCUS

“안전해요 충북도민, 사랑해요 자치경찰”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시책소개 - 현장 속으로 미래를 향해, 스마트 자치경찰!

“부산을 15분 도시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위원회 소식

자치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경찰청 소식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2022년 **9** 월

발행일 | 2022년 9월 26일

발행처 |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실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2022년

9 월

C O N T E N T S

9월호 특집 해외 경찰제도 탐방 ②



자유와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 경찰

1

자치경찰 INTERVIEW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홍익대학교 법학과 김성태 교수

9

현장 목소리

자치경찰제 1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충북

13

위원회 FOCUS

“안전해요 충북도민, 사랑해요 자치경찰”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15

시책소개 - 현장 속으로 미래를 향해, 스마트 자치경찰!

“부산을 15분 도시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21

위원회 소식

자치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23

경찰청 소식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25

해외 경찰제도 탐방 ② 자유와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 경찰



"Une force d'action et de protection au service de tous"

모든 사람을 위해 행동하고 보호하는 힘

‘자유’(Liberté)와 ‘평등’(Égalité) 그리고 ‘박애’(Fraternité)를 위하여



프랑스 혁명 당시 의회가 공포한 인권 선언에서 시작된 프랑스 국가 표어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입니다. 이에 대해 철학자 폴 티보르는 “자유와 평등이 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 ‘박애’는 사람들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의미하는 박애를 실현하는 중심에 프랑스 경찰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개요



단방국가(연방X)로서 프랑스는 공화제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절충 형태입니다. 국토면적은 67만 5,417km로 한반도의 약 3.1배입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국가의 행정분권과 자치분권의 이원적 체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행정구역 중 지방(Région)과 도(Département)는 국가 소관의 지방사무를, 코뮌(Commune)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각각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경찰 : 외교부, 프랑스개황 2018년

자치경찰 : 프랑스 공공데이터 플랫폼(<http://www.data.gouv.fr>)

구분	개 수	단체장	의결기관	역할
광역 (지방, Région)	18개 (본토 13, 해외 5)	관선 지방지사* * 주(主)도(Département)의 관선 도지사가 겸임 ※광역의회의장 겸임	광역의회	• 지역에 분산된 국가 행정업무 지휘 • 유럽연합(EU) 지역개발 프로그램 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계 • 지방자치단체 행정행위의 예산 규정 준수 여부 및 적법성 여부 사후 감독 •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발전·토지개발 정책 준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의 협상을 담당
중역 (도, Département)	101개 (본토 96, 해외 5)	관선 도지사 ※ 중역의회의장 겸임	중역의회	• 지방자치단체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 적법성 심사 • 경찰력을 바탕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할 책임 • 중앙정부의 토지 정비 및 개발정책 집행 •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행위의 통제
기초 (코뮌, Commune)	35,357개 (본토 35,228, 해외 129)	시장(코뮌별로 선출) ※ 시의회의장 겸임	시의회	•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수행

프랑스 경찰 개요

프랑스 경찰은 국가경찰인 국립경찰 및 국립군경찰과 기초 자치단체(Commune) 소속인 자치경찰로 구분됩니다. 치안은 내무부 소속인 국가경찰의 책임이며,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21일 치안에 관한 방향 및 계획법」

(제1조) 국가는 공화국 영토 전체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법률을 준수하고 국익과 국가기관을 보호하는 등 치안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경찰 인력 규모는 '18년 기준 국가경찰 24만 9,366명(국립경찰 14만5,863명, 국립군경찰 10만 3,503명), 자치경찰 22,780명*입니다.

* 국가경찰 : 외교부, 프랑스개황 2018년 / 자치경찰 : 프랑스 공공데이터 플랫폼(<http://www.data.gouv.fr>)

국가경찰

1 국립경찰 (Police nation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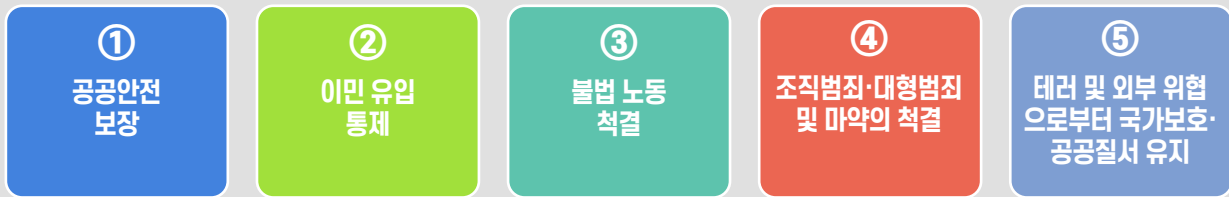
인구 2만명 이상 도시 지역(전 국토 면적의 5%, 총 인구의 50%)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경찰은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국립경찰총국장은 대부분 경찰관이 아닌 내무부 고위관료로 임명합니다.

〈국립경찰의 3대 임무 및 5대 목표〉

3대 임무



5대 목표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독립된 시·도경찰청은 없으며, 중앙조직인 국립경찰총국의 각 기능별 지방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찰의 각 기능별 지방 분소 현황〉

공공안전국 (DCSP)	▶ 각 도(Département)의 관선 도지사 산하에 지역공공안전국(DDSP)을 설치(총 102개)하고, 지역공공안전국장이 관선 도지사를 보좌하여 경찰서(전국 총 424개)를 지휘, 치안유지(전국 범죄의 62% 담당) ⇒ 신고출동, 범죄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및 교통단속
수사경찰국 (DCPJ)	▶ 광역도 및 9개 광역지역에 지방수사경찰국(DRPJ, DIPJ) 설치 ⇒ 조직 및 특수범죄 등 전국 단위 중요 범죄 수사* * 강력사건, 마약밀매, 인신매매, 위조지폐, 사이버범죄, 금융범죄, 대테러 등
자원기술국 (DRCPN)	▶ 파리 등 8개 지역에 지방분국(SGAP) 설치 ⇒ 인사·예산 등 경무
감사관실 (IGPN)	▶ 7개 지역에 지방분국 설치 ⇒ 감사·감찰
국경경찰국 (DCPAF)	▶ 2개 공항, 7개 지방(Région), 45개 도(Département)에 지방분국 설치 ⇒ 불법이민, 국경통제
경호국 (SDLP)	▶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지방분국 설치 ⇒ 국내·외 요인경호, 국제 행사 조직 및 조정
공화국안전국 (DCCRS)	▶ 7개 지역에 지방분국, 60개 경찰기동부대, 1개 경호부대, 9개 고속도로순찰대, 6개 싸이카 순찰대, 1개 산악구조대 설치

다만, 파리의 경우에는 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시·도경찰청과 같이 종합 기능*을 수행하는 ‘파리경찰청’을 두고 있습니다. 파리경찰청장은 관선 도지사가 담당하는 국립경찰이며, 국립경찰총국장이 아닌 내무부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습니다.

* 범죄예방, 경비, 교통, 수사, 정보업무 등 수행

2 국립군경찰 (Gendarmerie nationale)



인구 2만명 미만 농·어촌이나 도시 주변 지역(전 국토 면적의 95%, 총 인구의 50%)의 일반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군경찰은 조직 구조상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평소 직무 활동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지휘권·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를 비롯한 비상시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휘권이 부여됩니다.

국립군경찰총국장은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임명되어 문민통제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군경찰의 임무

국립경찰과 동일하게 수사경찰 및 예방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둔 부대 내외의 헌병 및 대테러 활동 등 군인으로서의 국방의무도 수행

지방조직은 행정구역에 따라 '연대-대대-중대-소대'로 편제되며, 非군사업무인 예방경찰업무에 대해서는 각 관할 관선 지사가 지휘합니다.

특별히 파리에는 국립경찰과 중첩하여 국립군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Police Municipale)



1 근거 및 운영

프랑스의 「지방자치법」 제L2212-1 조에서 “시장은 관선 도지사의 행정적 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사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됩니다.(다만, 자치경찰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경찰 조직을 직접 지휘)

그러나 자치경찰 사무수행과 관련해서는 관선 도지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자치경찰이 보조사법경찰리로서 사법경찰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검찰의 통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자치경찰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내무부장관은 시장, 관선 도지사 및 검사의 요청에 따라 '자치경찰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임의적 설치



자치경찰의 설치 여부는 각 기초자치단체(Commune)의 선택이며, 자치경찰을 미설치할 경우 관할 국가경찰과의 협약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국가경찰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없는 경우 도시 지역은 국립경찰에, 농촌 지역은 국립군경찰에 시장의 자치경찰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국립경찰이나 국립군경찰은 해당 지역의 경찰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자치경찰 조직은 협의 없이 기초자치단체(Commune)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5인 이상인 경우 시장과 관선 도지사는 지방검사장의 의견 조회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해당 협약을 통해 자치경찰의 개입장소 및 개입원인을 특정하고 국가경찰의 개입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의 인력 규모는 기초자치단체(Commune)의 규모 및 재정자립도, 시장의 치안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되며,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Commune)의 경우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자치경찰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18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약 90%가 5명 내외의 소규모 자치경찰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초자치단체별 자치경찰 현황('19년 기준)〉

도시	도시인구 수 ('16년 기준)	자치경찰관	인구 1만 명당 자치경찰관 비율
마르세유	862,211명	450명	5.22명
리옹	515,695명	335명	6.50명
툴루즈	475,438명	330명	6.94명
니스	342,637명	550명	16.05명
낭트	306,694명	115명	3.75명
몽펠리에	281,613명	183명	6.65명
스트라스부르	279,284명	157명	5.62명
보르도	252,040명	122명	4.84명
릴	232,440명	120명	5.16명
렌느	216,268명	75명	3.47명

3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의 사무는 크게 예방경찰의 임무와 수사경찰의 임무로 구분됩니다.

먼저 예방경찰의 임무는 「지방자치법」 제2212-2조에 따라 공공질서와 안녕, 안전 및 공중위생에 관하여 예방 및 감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치경찰은 「국내치안법」 제511-1조에 따라 국가경찰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사무 중 '예방경찰' 임무

- ▶ △도로·부두·광장·공공도로에서의 통행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모든 업무 △청소·조명설비·교통체증제거 △붕괴 위험이 있는 묘지의 건조물 및 묘비의 철거·보수 △추락하여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창문이나 건물의 그 외 다른 부분에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통행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거나 유해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건물 밖으로 투척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 △길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소란스러운 싸움이나 언쟁 △공공다중시설에서 격앙된 소동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회 소음이나 안온방해 또는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야간집회 △기타 공공평온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
- ▶ 정기시장, 상설시장, 축제, 공식행사, 경기장, 식당, 교회 기타 공공장소 등과 같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
- ▶ 무게를 재거나 측정하여 물건을 파는 식료품의 계량에 대한 정확성 및 판매 중인 식품의 위생을 검사하는 행위
- ▶ 화재, 홍수, 제방붕괴, 토사·암석의 낙반, 눈사태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유행병, 전염병, 동물유행병 등과 같은 재해 및 재난을 적절히 주의 및 예방하고,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 중단시키며, 긴급한 경우 구호·구조활동을 직접하거나 상급 행정기관에 개입을 요청하는 행위
- ▶ 공공도덕이나 타인의 안전 혹은 재산보전에 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의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 맹수나 유해동물을 방지하여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제거하는 행위

한편, 수사경찰의 임무는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라 보조사법경찰리로서 사법경찰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치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관할 국가경찰의 사법경찰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감독 하에 보고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신분확인 △신체 측수검사 △육안검사 △가방검사 등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자치경찰「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사례

<비시> 자치경찰 연동 침입경보시스템

'07년 비시 자치경찰이 도입한 원격감시시스템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기를 자치경찰의 원격 감시시스템과 연결하여 침입경보 발생 시 자치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함. 경보 발생 시에는 자치경찰 상황실에서 확인전화를 하고 응답이 없거나 신원확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인근 순찰차가 출동

※ 신청비용은 당초 연 360유로였다가 2016년부터 연 150유로로 인하

<마르세유> 시민성 교육프로그램

마르세유 시청, 법원, 국가경찰, 도의회 및 교육청과의 협력 하에 범죄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및 위법한 행위를 한 상인을 교육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학교결석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신고된) 공공질서 및 평온을 해치는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짐. 상인은 공물의 무단점유 및 위생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됨

5 예산의 독립성

자치경찰 예산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Commune)가 전적으로 부담하나,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지역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지역에서만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에 대한 보수도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6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프랑스의 긴급신고전화는 크게 경찰, 소방, 응급의료로 삼분되어 있으며, 경찰 긴급신고전화는 국가경찰만 접수합니다. 자치경찰은 일반전화 신고가 있는 경우에 접수 처리하며 그 내용이 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국가경찰에 연락하여 이첩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신고 시에도 자치경찰이 출동하긴 하나 사고조사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므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통보 후 주변 교통통제 등 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에 관한 1999년 4월 15일 법」을 근거로 공조협약을 체결*하며, 해당 협약을 통해 양자간 상호 지원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자치경찰관이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가경찰과 공조협약을 체결해야 함

표준 공조협약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함과 자치경찰의 개입 장소 및 원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합동 경찰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경찰 책임자의 지휘 하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협약에 명시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표준협약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임무가 우선적으로 국가경찰에 있다고 규정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홍익대학교 법학과
김성태 교수님

본 인터뷰는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담아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경찰법의 권위자이신
홍익대학교 법학과 김성태 교수님을 찾아뵙고
여러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

〈진행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찰법의 대가이자 자치경찰제 관련 이론과 실무 모두의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성태 교수님〉 (웃음) 아닙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답해주시면 좋을 텐데, 부족하지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해 7월 1일, 전국에 전면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그동안 국가경찰에 의한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주민의 참여와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치안행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자치경찰제는 새로운 이정표이지요.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각 시·도에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된 점도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제도 안착을 위해 애쓰셨는데,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요?

제가 속해있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경찰 단위로 새로 시행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역 주민들이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인사, 예산 등 법령에 따른 운영상의 제약이나 실무상 과도기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지사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행사나, 국가경찰 소속인 경찰관의 자치경찰 임무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에서의 법령상 제약 같은 것이 그러합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 행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이 모두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구

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법령이 정한 심의·의결 사항으로 보아 사전에 위원회에 부의할 것인지, 혹은 사후 확인·통제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령의 보완·개선과 적절한 실무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과 같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경찰 임무를 나누어 그중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정하였기 때문에 새로 자치경찰을 시행하더라도 경찰로서의 역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임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는 입법도 시간을 두고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구분함에 있어 경찰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의 경우 처벌에서는 수사사무가 되지만 처벌 이전 단계에서는 위험방지사무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가 혼재될 수 있는 것이지요. 「스토킹처벌법」은 ‘사법경찰관’을 주체로 정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시경찰청에 경위 보고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국가경찰사무인데 왜 자치

경찰위원회가 관여하느냐'라며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를 사무국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과 실제 작용에 있어 (사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긴밀히 협의하고 기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등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경찰제의 본질상 이원화된 자치경찰로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에 대한 책임성 제고, 치안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경찰 조직과 분리된 별도의 조직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각 사무의 적정한 배분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원화된 자치경찰 조직에서 행하는 수사사무 범위의 확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사에서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나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지역 유력자의 개입을 막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과거 홍익표의원의 이원화 모델안의 경우 국가경찰 지구대·파출소와 자치경찰 지구대·파출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분리할 필요 없이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양쪽으로 지구대·파출소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범죄신고에 따른 출동, 현행법체포, 기초 조서 작성 등 국가경찰사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초동수사 등의 업무 정도는 자치경찰사무로 이관되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일단 자치경찰에서 초동수사를 한 후 국가경찰에 인계하여 본격적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무엇보다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각자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기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조직을 구



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대한 자치경찰로의 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 국가경찰 단일 체제에서 익숙해진 국가경찰의 조직 구성을 이원화와 함께 다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국가 전체에서의 재원을 늘리는 방안은 제가 답하기는 어렵고 (웃음),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입법적으로 결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추천기관이나 위원 수 등 자치경찰의 민주성·정치적 중립성·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로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제 위원 구성에서 전문성이 충족되는 데에 비해 다양한 주민의 뜻과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대표성까지 양자를 모두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난점을 고려한다면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원화 자치경찰제 하에서의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역할 또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하에서의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조직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와 같은 일원화 체제에서의 자치경찰의 법집행은 시·도경찰청장과 이에 속한 경찰관들의 인식과 의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행하는 자치경찰작용에 대해서 사전 심의·의결이나 사후의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무국 내 경찰공무원의 법정 정원을 늘려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원화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부서의 정책수립과 기획 기능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고 시·도경찰청은 주로 집행기능만을 담당하는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때 현장경찰관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경찰관들의 신분을 일단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 특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의

한 경찰관의 시설·장비 및 근무환경의 개선, 복지증진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승진에서의 불이익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생적 자치경찰이 아닌, 법제도의 변화를 통한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으로서 어떤 모습만이 옳은 것이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보완·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오늘도 고생하시는 전국의 모든 자치경찰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분들, 그리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인터뷰 답변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성태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약력

- 1966년생
- (前)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 국회 입법지원위원 등
- (現) 서울시자치경찰위원 / 서울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등

자치경찰제 1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충북



자치경찰제가 도입된지 1년 여가 흘렀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현장의 큰 혼란 없이 제도가 안착되어 가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 주민 친화적 시책들을 본격 발굴하기 시작한 점 등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성과일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치경찰제를 보완·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넘어 이원화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현장에서 직접 담당·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업무를 해본 이들이야말로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의미있는 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북을 시작으로 각 시·도의 현장 목소리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설문 기간·방식 : '22. 8. 26. (금) ~ 31.(수), 서면 및 개별 전화 인터뷰

설문 대상 : 충북청·경찰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기능 및 충북도자치경찰청 소속 경찰관·일반직

설문 내용 : 제도 시행 이후 좋아진 점, 개선점 및 발전 방향 제언 등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면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발굴, 도 예산 확보 용이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복리후생 향상**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 “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발굴이 가능해짐 ”
- “ 경찰만이 아닌 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정책 구상의 시야와 폭이 좀 더 넓어짐 ”
- “ 자치경찰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예산 확보가 좀 더 수월해졌음 ”
- “ 자치경찰의 복리후생비가 지방 일반직 공무원 수준까지 상향되어 가고 있음 ”



반면, **업무량 증가,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 도의 소극적 태도, 자치경찰에 대한 현장경찰관의 냉소적 반응** 등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 “ 기존에 도경찰청에서 경찰서로 배정·관리하던 예산이 위원회에서 경찰서로 직접 배정·관리하게 되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곤란한 것 같음 ”
- “ 기존에 도경찰청에만 제출하던 치안종합성과평가 보고서 외에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찰서장 치안종합성과평가 보고서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업무가 많아졌음 ”
- “ 자치경찰사무의 경우 도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인데, 도와 경찰의 업무 수행 방식의 차이에 따른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자치경찰이 도의 책임 영역이라는 인식이 다소 부족함 ”



향후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현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준수 및 경찰업무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시 △자치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명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방안과 경찰 업무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 “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20년 이원화 모델 논의 당시 거론되었던 국가경찰(국가직)→자치경찰(지방직) 신분 전환자에 대한 △특진 △사·도간 인사교류 허용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 “ 새 정부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함 ”

안전해요 충북도민, 사랑해요 자치경찰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충북자치경찰 첫 걸음 1년, 도민의 시각에서 그간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를 소통하다

충북자치경찰의 중심축인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해요 충북도민, 사랑해요 자치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을 품은 채 '21. 5. 28.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주민중심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출범한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치안협약체」 운영 △지역농산물 도난예방 대책 △주취자 응급의료 센터 개소 등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도민의 생각을 정책 과정에 담아 내어 추진하는 등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 성과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보고 향후 추진 정책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소통하는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내 12개 경찰서별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입니다.

주민대표로는 지역별·성별·연령별 다양성을 가진 약 30여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 정책을 발굴·제공하여 '주권재민(主權在民) 자치경찰제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협의를 거쳐 청주시의 '1인 가구 안전망 지원 조례' 제정, 제천시 '네바퀴 순찰대'* 발대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관광택시단을 중심으로 구성, 수확철 농산물저장소 등을 순찰



농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 추진



한 해 농사를 위해 수고한 농민들에게 농산물 도난은 그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가 많은 충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먼저 범죄취약개소 3,940개소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였고, 172개의 취약개소를 집중순찰 지역으로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 CCTV 4,115대를 일제 점검하고 79대를 신규 보급 진행 중이며, 작목반·농협 등 유관기관과 95회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1,325회의 합동순찰을 벌였습니다.

나아가 경고문 부착,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도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죄자의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린이 안전 통학로」 만들기



보행공간 분리·확보(청주시 청주교대 부설초)



옐로카펫 설치(청주시 소로초)



보행자 전용 데크길 (단양군 단양초)



노란색 신호등 설치(청주시 모충초)

어린이가 마음 놓고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3년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267개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를 대상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어린이가 잘 보이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조성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받는 교통행정 구현을 내용으로 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신설 △보행공간 확보 △제한속도 운영 등 어린이 통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공간을 확보하였고, 시인성 강화를 위해 △옐로카펫·노랑신호등 설치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자치경찰위원회」의 브랜드화를 위한 노력

슬로건·비전 및 CI 선정



슬로건 “안전해요 충북도민! 사랑해요 자치경찰”

※ 충북도민 대상 공모작 143점 중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

비전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

※ 경찰 임무를 ‘범죄예방’의 소극적 관점에서 ‘도민행복’이라는 적극적 관점으로 확대

캘리그래피·UCC

말없이 도와주시고
소리없이 보호해주시는
자치경찰

인권공존
믿음직한 자치경찰

인권이 존중받는
자치경찰
우리의 삶이
안전해집니다

※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공모전('22.5.1.~5.31.) 수상작

「내고향 내부모 사랑愛 모금사업」을 통한 자치경찰 사업 예산 확보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내고향 내부모 사랑愛 기금’*으로 모금된 금원을 자치경찰 사업에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경찰청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간 임무 분담을 규정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법」(2023. 1. 1. 시행 예정)에 근거

업무협약에 따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생활안전·교통 분야의 모금 사업을, 대한적십자사 충북 지사에서는 여성·청소년 분야의 모금 사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도, 충북경찰청은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 정책을 발굴·수립하며,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및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서 구체적 사업 추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만 바라보며. 주민이 만족할때까지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실천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에 있습니다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현 위원장



이 땅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당초 자치분권에 기인하여 완성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 준비해 왔던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위 ‘이원화 모델’을 버리고 ‘일원화 모델’을 선택하여 자치경찰제 정착에 많은 혼선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란 자치분권의 이념에 기반하여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시스템을 지방분권적 자치경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경찰행정을 실현하는 제도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 다양성과 지역성, 그리고 민주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생각을 경찰행정 과정에 담아내어 ‘주민(지역)밀착형’ 경찰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자치분권시대’를 지향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행정시스템이 지닌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경찰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통해서 주민에게 더 참

좋은 ‘**민생치안의 틀**’을 만들어 ‘**주민만족의 자치경찰제**’를 실천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경찰행정이 자치행정, 교육행정, 소방행정, 복지행정 등과 **협치 시스템**을 만들면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이루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어서 소위 ‘**지방정부의 완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 정책 과정에 지역주민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지방자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희망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시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치안망이 더 촘촘**해진다고 소곤소곤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가경찰은 전국 통일성 위주의 경찰활동에 열중하였지만 자치경찰제가 출범하면서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활동으로 **경찰활동의 방향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칭송도 들려옵니다. 전국의 18개 위원회가 제시하고 실행 중인 주요 정책 비전과 발전 방향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주민 지향적 자치경찰**

운영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도 비전과 슬로건의 결정과정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약 및 공동 업무 추진, **충북경찰청**과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자치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울타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 정책은 충북자치경찰에서 주도한 상징적인 정책으로, 자치경찰 운영과정에 주민참여의 길을 보장하여 주민의 생각을 치안 정책 과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살린 경찰 활동**이 증대되며, **주민만족의 치안 행정체제**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자치경찰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예측한 운영 효과를 보면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통합적 치안+행정서비스**가 증대된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자치단체와 자치경찰 간 협업으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정부예산의 집중투자**가 가능해지며, 통합적 사업추진으로 **주민만족 치안행정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발생 시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사건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가동**될 수 있으며, 신호등, 가로등, CCTV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경찰청(경찰서)과 도청(시·군)의 협업 강화로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도민이 더 행복한 치안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효과를 자랑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미완의 자치경찰제 속에서 **완성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 여겨집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률의 완결성이 부족하거나 일원화 모델의 운영, 법에 명시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의

권한이 형식성의 범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그것입니다. 또한 일부 경찰관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소통) 부족으로 위원회와 갈등요소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 옵니다.

그래도 전국의 위원회와 자치경찰들이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어 희망은 보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다’는 속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과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위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아가 할 것입니다.

향후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적용되는 기능 이양에 걸맞는 **인사, 조직, 재정 등의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자치경찰제 운영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명제의 실현의미로서 자치경찰제 정착이라는 ‘**주권재민의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운영에 있어 기존의 경찰중심 행정체제에서 **주민중심 행정체제**로 방향키를 잡고 **주민들이 무엇을 보호받고 싶어 하는가**를 찾아내어 주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함께 준비해 온 임용환 前 충북청장(現 광주청장)님, 출범 1년의 운영과정에서 예민했던 인사, 조직, 사업운영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정용근 前 충북청장(現 본청 교통국장)님, 그리고 함께 달려온 충북자치경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현 위원장 약력

1960년생

청주대학교 행정학 박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現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부산을 15분 도시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

도입 계기



부산시는 '21년 부산 중앙대로(서면~충무동)에 BRT(간선급행버스 체계 :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도로에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통하였습니다. 다만, 도로 중앙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하는 BRT의 특성으로 인해 도로용량이 감소되고 좌회전·유턴 등 회전이 제한됨에 따라 신호위반·꼬리물기 등 법규위반 행위 및 교통혼잡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BRT 개통 후 주요 교차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부산시 주요 정책인 「15분 도시」를 구현하고자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란?

-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 등이 주창한 개념으로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통해 15분 이내에 모든 일상적 필요시설에 갈 수 있는 도시를 의미
- 근거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동네 주민들이 친자연적 생활환경 및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시를 지향하며, 세계 여러도시가 이 개념을 채택하여 도시 계획에 적용
- ①미국 포틀랜드 ②호주 멜버른 ③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유사한 명칭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21년 5월에 「15분 도시」 비전을 선포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2년 3월 박형준 부산시장, 프랑스 소르본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15분 도시」 공감 토크쇼

사업 개요

사업내용	혼잡 교차로*에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 * 혼잡 교차로 : 교차로 신호 대기차량이 녹색신호시간 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여, 교차로에 남아 다음 녹색신호를 기다리게 되어 교통혼잡이 발생(증가)하고 있는 교차로
사업대상	신호주기 180초* 이상 중심 혼잡 교차로 * 교통혼잡현상 해소를 위해 신호주기 증가(약 180초) ⇨ (악순환) 신호대기시간 증가
사업기간	’22년 10월(예정) 시범사업 1개소
추진방법	부산경찰청, 부산시 교통국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
’22년시범사업비	1억 5천만원(부산시와 협의 중)

주요 내용

① 정보 수집

영상검지기**를 통해 교통정보 및 관련 영상자료를 수집

* 카메라 등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차량 존재유무·차종·속도·대기행렬 길이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차량검지기

** 과거에는 도로 노면에 설치된 루프검지기(자기장을 통해 차량검지)를 사용하였으나, 차로별로 설치해야 하는 점과 유지보수 비용 등의 문제로 영상검지기 대체 추세

② 정보 분석

AI 영상분석 장치를 통해 영상자료의 △교차로 방향별 차량 대수 △차종별 차량 대수 △유턴차량 △차량계적 △대기행렬 길이 등을 분석

– △방향별 교통량 △대기행렬 길이에 따른 교통수요 △차종별에 따른 출발(시작) 가속력' 등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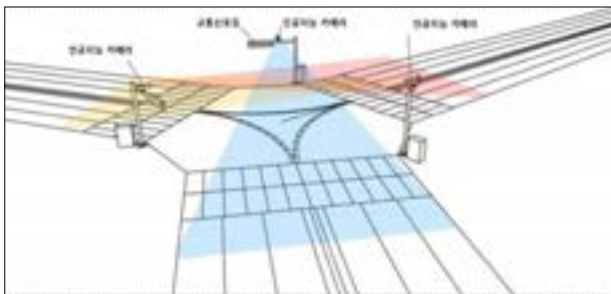
⇒ 교차로 모든 방향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분석

③ 신호 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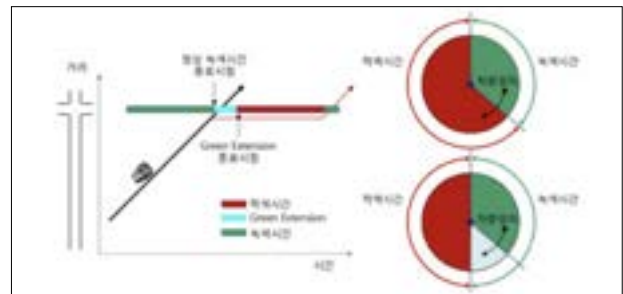
②에서 분석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교통량에 대응하는 최적의 교통신호 제어

※ △교통신호 조기종결(방향별) △녹색신호연장 △신호삭제(Skip) 등 기능 활용

※ 교통신호 시스템의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상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해당하여 외부시스템과 연계가 차단되어 있으므로, 현장제어 방식으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AI 영상분석 장치와 교통신호제어기 모두 교차로 현장에 설치)



영상검지 체계(영상검지기, AI 영상분석)



최적교통신호 제어(예시: 녹색신호 연장)

기대 효과 - 미래형 도시를 향한 발걸음

‘15분 도시’의 15분은 단순히 15분의 시간 그 이상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분 내의 생활권에 학교, 직장, 의료, 상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완전한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내의 미래 지향적 정책인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은 부산시가 지향하는 ‘15분 도시’를 구현하는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체계

■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

최적화된 교통신호체계로 인해 교통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 향상 ⇒ ▲교통불편 해소 ▲통행 시간 절감 편의 증대 등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

■ 친환경 도시 지향

차량 교통체증이 감소됨에 따라 탄소중립 도모, 친환경적 도시로 변화

■ 교통약자 보호 등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신호대기 시간을 감소시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무단횡단 방지 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증대

⇒ 시민의 보행권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

자치경찰 현장에서 지금

대구 '대구형 스마트셉테드 플랫폼' 구축 추진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는 '대구형 스마트셉테드(CPTED)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학치안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선행연구 용역' 공모에 선정

대구형 스마트 셉테드(CPTED) 주요 내용

- ▶ 치안문제 해결이 필요한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성 추진
- ▶ AI(인공지능)·지능형 CCTV·스마트 조명(가로등)·스마트 안심 버스승강장 등 새로운 범죄예방 시스템 도입
- ▶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체계 구축

경북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2. 8. 30. 포항의료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도내 최초)하고 본격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장경찰관들은 주취자 응급의료 필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센터에 주취자를 인계하고 신속히 업무에 복귀하게 되어 그만큼 치안공백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주취자 역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충남 자치경찰제 관계관 회의 개최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22. 8. 31. 충남도청에서 충남 지역 내 시·군-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도경찰청간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전·전남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치경찰제 공감대 확산 주력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는 대전형 자치경찰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22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경찰 거점순찰형 이동형 CCTV 설치·운영 △바닥 신호등 및 우회전 신호등 설치 △골목길 야간보행 안전 강화 등 5개 제안을 선정하였고, 향후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남경찰청과 함께 '22. 10. 11.까지 「자치경찰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주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 자치경찰 정책포럼 개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1주년을 기념하여 9월 1일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주관). 해당 포럼에서는 먼저 새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 및 확대추진 방향에 대한 기조 강연이 있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과거와 현재'(제1세션), '제주가 선도하는 자치경찰제의 미래'(제2세션)를 각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경찰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 정책간담회」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실에서는 제23대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과 함께 제2기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출범을 맞아 '22. 9. 6. 자치경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정원 확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총경 화상회의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경무관 김성희)은 '22. 8. 31. '22년 하반기 인사발령 이후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총경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자치경찰제 운영 방향 및 주요 현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파견기간 연장 협의 결과 등을 공유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년,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그간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도 관련 세미나·포럼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의견 청취 기회는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기능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등이 고루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일정

9. 20. (세종)	9. 23. (강원)
9. 30. (제주)	10. 4. (대전·충남)
10. 6. (부산·울산·경남)	10. 12. (대구·경북)
10. 14. (서울)	10. 18. (인천)
10. 20. (경기남부)	10. 26. (경기북부)
10. 28. (광주·전북·전남)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기고문 안내

자 격

자치경찰에 관심 있는 누구나

내 용

자치경찰 관련 무엇이든

제출 방법

소속 · 성명 기재, 별도 양식 없이 작성하여 메일(thingsshyun@police.go.kr) 제출

※ 문의 :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 경사 김범수(02-3150-3984 / 경비 8-3984)

제출 기한·분량

수시 제출, A4 2장 이내(사진 등 첨부 가능)

※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다음 월호에 게재됩니다.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2022년 9월

발행일 2022년 9월 26일 No. 12

발행인 김성희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편집자 전창훈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

임윤상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

김범수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

‘자치경찰 소식지’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각종 정책 수립·추진 사항 등을 안내·공유하기 위해 매월 온라인(PDF) 형태로 발간, 전국 경찰관 및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학회·연구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